

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8년 5월 6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5월 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4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(2008년 5월 19일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 설명자 :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)

□ 제안이유

-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협의회의 위원 위촉대상에서 주민대표(시의원) 및 유관기관장을 제외함.(안 제3조제3항)
- 나. 지구단위협의회 규정을 삭제하고,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7조)
- 다. 협의회에 부치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도시재정비촉진 관련 담당 공무원도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0조)
- 라.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.(안 제15조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협회의의 설치 및 기능)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<u>다만, 재정비촉진지구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별도의 협의회(이하 “지구단위 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u></p> <p>1·2 (생략)</p> <p>3.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<u>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</u></p>	<p>제2조(협회의의 설치 및 기능)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<삭 제></u></p> <p>1·2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<u>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</u>-----</p>
<p>제3조(협회의의 구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<u>협의회의 위원은 재정비촉진사업업무담당국장, 재정비촉진지구별 사업시행자·총괄계획가·총괄사업관리자, 주민대표, 도시·건축·조경·교통·부동산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유관기관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주민대표는 재정비촉진지구 출신 부천시의회의원으로 재정비촉진지구별로 각 1명을 위촉한다.</u></p>	<p>제3조(협회의의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재정비촉진구역별</u>----- <u>총괄사업관리자</u>----- ----- ----- <u>전문가</u>----- ----- ----- . <u><삭 제></u></p>
<p>제6조(회의) ① (생략)</p> <p>② <u>협의회의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</u></p>	<p>제6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위원장</u>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공통적인 안건은 협의회에서 담당하고, 해당 재정비촉진지구 <u>에 한정된 안건은 해당 지구단위협의회에서 담당한다.</u></p> <p>⑤ 지구단위협의회의 협의를 받은 안건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 다만, 협의회에서 권한 위임하는 경우에 한한다.</p> <p>제7조(지구단위협의회) ① 지구단위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② 지구협의회는 위원으로 재정비촉진사업업무담당국장, 재정비촉진지구별 사업시행자·총괄계획가·총괄사업관리자 및 부천시의회 의원 2명으로 한다.</p> <p>③ 지구단위협의회의 임기, 임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을 적용한다.</p> <p>제8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제7조(소위원회) ① 협의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8조(위원의 해촉)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<u>협의회 및 지구단위협의회</u>의 위원을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</p>	<p>----- -----<u>협의회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1.~4. (생략)</p> <p>제9조(간사 등) <u>협의회 및 지구단위협의회</u>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, 간사는 재정비촉진사업업무담당과장이, 서기는 재정비촉진사업업무담당이다.</p>	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간사 등) <u>협의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0조(부의안건의 설명) <u>부의안건</u>에 대한 설명은 용역사의 책임기술자가 설명하여야 하며,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설명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(부의안건의 설명) <u>회의에 부치는 안건</u>-----<u>재정비촉진사업 관련 담당공무원 또는 용역사</u> ----- -----.</p>
<p>제11조(회의 등의 비공개) <u>협의회 및 지구단위협의회</u>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11조(회의 등의 비공개) <u>협의회</u> ----- -----.</p>
<p>제12조(수당 등) <u>협의회 및 지구단위협의회</u>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2조(수당 등) <u>협의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3조(비밀의 유지) <u>협의회 및 지구단위협의회</u>의 회의 및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는</p>	<p>제13조(비밀의 유지) <u>협의회</u>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5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</p>	<p><삭제></p>
<p><u>된 사항 이외의 협의회 및 지구 협의회</u>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<u>협회의 의결을 거쳐</u> 위원장이 정한다.</p>	

3.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<p>○ 지구단위협의회 규정을 삭제하고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사업협회에서 혼선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?</p>	<p>○ 사업협의회 위원을 20명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20명중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소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사업협의회에서 위임하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.</p>
<p>○ 금번 시의원이 주민대표로 제외된 이유는?</p>	<p>○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으로 인해 제외되었으며 시의원 중 전문가로 인정되는 분은 위촉이 가능함.</p>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47호
의결 년월일	2008. 5. 23 (제143회)

제출년월일 : 2008. 5. 6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협의회의 위원 위촉대상에서 주민대표(시의원) 및 유관기관장을 제외함.(안 제3조제3항)
- 나. 지구단위협의회 규정을 삭제하고,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7조)
- 다. 협의회에 부치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도시재정비촉진 관련 담당 공무원도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0조)
- 라.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.(안 제15조)

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단서부분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협의회에 부의하는”을 “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재정비촉진지구별”을 “재정비촉진구역별”로 하고, “총괄사업관리자, 주민대표”를 “총괄사업관리자”로 하며, “전문가 및 유관기관장”을 “전문가”로 하고, 후단을 삭제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협의회 의장”을 “위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소위원회) ① 협의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 본문 및 제9조 중 “협의회 및 지구단위협의회”를 각각 “협의회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부의안건”을 “회의에 부치는 안건”으로 하고, “용역사”를 “도시재정비촉진 관련 담당공무원 또는 용역사”로 한다.

제11조·제12조 및 제13조 중 “협의회 및 지구단위협의회”를 각각 “협

의회”로 한다.

제15조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협회의의 설치 및 기능)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<u>다만, 재정비촉진지구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별도의 협의회(이하 “지구단위 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u></p> <p>1·2 (생략)</p> <p>3.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<u>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</u></p>	<p>제2조(협회의의 설치 및 기능)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<삭 제></u></p> <p>1·2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<u>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</u>-----</p>
<p>제3조(협회의의 구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<u>협의회의의 위원은 재정비촉진사업업무담당국장, 재정비촉진지구별 사업시행자·총괄계획가·총괄사업관리자, 주민대표, 도시·건축·조경·교통·부동산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유관기관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주민대표는 재정비촉진지구 출신 부천시의회의원으로 재정비촉진지구별로 각 1명을 위촉한다.</u></p>	<p>제3조(협회의의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재정비촉진구역별</u>----- <u>총괄사업관리자</u>----- ----- ----- <u>전문가</u>----- ----- ----- . <u><삭 제></u></p>
<p>제6조(회의) ① (생략)</p> <p>② <u>협의회의의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</u></p>	<p>제6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위원장</u>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공통적인 안건은 협의회에서 담당하고, 해당 재정비촉진지구 <u>에 한정된 안건은 해당 지구단위협의회에서 담당한다.</u></p> <p>⑤ 지구단위협의회의 협의를 받은 안건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 다만, 협의회에서 권한 위임하는 경우에 한한다.</p> <p>제7조(지구단위협의회) ① 지구단위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② 지구협의회는 위원으로 재정비촉진사업업무담당국장, 재정비촉진지구별 사업시행자·총괄계획가·총괄사업관리자 및 부천시의회 의원 2명으로 한다.</p> <p>③ 지구단위협의회의 임기, 임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을 적용한다.</p> <p>제8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제7조(소위원회) ① 협의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8조(위원의 해촉)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<u>협의회 및 지구단위협의회</u>의 위원을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</p>	<p>----- -----<u>협의회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1.~4. (생략)</p> <p>제9조(간사 등) <u>협의회 및 지구단위협의회</u>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, 간사는 재정비촉진사업업무담당과장이, 서기는 재정비촉진사업업무담당이 된다.</p>	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간사 등) <u>협의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0조(부의안건의 설명) <u>부의안건</u>에 대한 설명은 <u>용역사의 책임 기술자가 설명하여야 하며,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설명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0조(부의안건의 설명) <u>회의에 부치는 안건</u>-----<u>재정비촉진사업 관련 담당공무원 또는 용역사</u> ----- -----.</p>
<p>제11조(회의 등의 비공개) <u>협의회 및 지구단위협의회</u>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11조(회의 등의 비공개) <u>협의회</u> ----- -----.</p>
<p>제12조(수당 등) <u>협의회 및 지구단위협의회</u>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2조(수당 등) <u>협의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3조(비밀의 유지) <u>협의회 및 지구단위협의회</u>의 회의 및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는</p>	<p>제13조(비밀의 유지) <u>협의회</u>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5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</p>	<p><삭제></p>
<p><u>된 사항 이외의 협의회 및 지구 협의회</u>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<u>협회의 의결을 거쳐</u> 위원장이 정한다.</p>	